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감치대상자 특정 및 신원확인 조치〉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579호)

2026.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최 기 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감치대상자 특정 및 신원확인 조치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26.
3. 회 부 일 : 2025. 11.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법정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결정으로 소란행위자 등을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법정에서의 소란 등 행위로 재판장으로부터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감치대상자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감치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한 사례가 발생함.

감치는 그 제도적 특성상 감치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잘못 감치할 염려가 적음에도 해당 사례에서는 성명 불분명 등을 이유로 감치가 집행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바, 결국 법정에서의 소란 등을 지속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어서 시급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감치를 집행할 수 있게 하되 그 경우 행정안전부 등에 지문대조조회 요

청 등 후속조치를 하게 하여, 법정질서를 확립하고 재판의 권위를 지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Ⅲ. 검토의견

1. 감치대상자 특정 및 신원확인 조치

- 개정안은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 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의 지 문대조조회 요청 등 유치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 번 호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61조(감치 등) ① · ② (생략)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후단 신설> <신설>	제61조(감치 등) ① · ② (현재와 같음) ③ ----- -----. 이 경우 감치 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특정하여 유치할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에 따라 감치대상을 유치한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④ ~ ⑥ (생략)	<u>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의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 유치한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 등록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u>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

- 현행법 제61조¹⁾는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 또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

- 1) 「법원조직법」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함.

다만, 행위자를 즉시 구속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할 수 있고,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함.²⁾

- 그런데 최근 법정 소란으로 피고인의 대리인에 대하여 재판장이 감치명령을 하였으나, ‘인적사항 미확인’이라는 이유로 실제 집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감치대상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³⁾에도 감치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인상, 체격, 기타 감치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1조(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

- ③위반자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되지 아니한 경우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판장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반자를 구인하게 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집행장에는 재판을 받은 위반자의 성명, 주거 기타 위반자 본인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3) 당시 문제가 된 사안에서 감치 집행명령서에 구체적인 인적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에서 수용을 거부하였음.

으로 특정하여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감치대상자를 유치한 경찰서장,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행정안전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의 지문대조조회 요청 등을 통하여 감치대상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에 대하여는 감치는 인신을 제약하는 처분으로 감치대상자의 신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상, 체격 등으로 인신 구속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유사한 사람을 착오로 유치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에 따른 인신구속의 위법성 문제 및 국가의 책임 소재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그러나, ① 감치는 인신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구속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경우에도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⁴⁾,

② 개정안 제4항에서 경찰서, 교도소, 구치소 등에서 지문정보 조회 등을 통해 감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여 보완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임.

4) 「형사소송법」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②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정 질서 유지, 감치 집행의 적시성, 공정하고 원활한 재판,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법 신뢰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1